

제 254회 국회(임시회)

2005년 6월 10일(금)

대정부질문

교육 · 사회 · 문화분야

무상교육!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 254회 국회(임시회)

2005년 6월 10일(금)

대정부질문

교육 · 사회 · 문화분야

무상교육!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 (비례대표)

무상교육!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최순영입니다.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상교육은 지난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TV 토론에서 누누이 지적 했듯이, 대부분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충격적이고, 신선하게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낙후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흔히 학교교육을 공교육이라고 하는데, 공교육의 본질은 국가에서 교육을 무상으로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교육은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입니다.

<표 1> 교육비 부담구조에 대한 국제비교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정부부담	민간부담	정부부담	민간부담
미국	93.0	7.0	34.0	66.0
일본	91.5	8.5	43.1	56.9
스웨덴	99.9	0.1	87.7	12.3
프랑스	93.0	7.0	85.6	14.4
OECD 평균	92.4	7.6	78.2	21.8

한국	76.2	23.8	15.9	84.1
----	------	------	------	------

*자료출처: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

무상의료와 함께 무상교육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핵심 인프라입니다. 공교육은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 시스템으로서 발전해 왔으며, 무상교육은 현대국가 일반의 국정 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7대 총선 공약으로 무상교육을 위한 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¹⁾ 민주노동당의 무상교육의 기본 방향은 먼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상교육을 수업료뿐만 아니라 급식·교재비 등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무상화하고, 무상교육단계를 유아교육과 고등학교로 확대하여, 유아에서 고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과 평생교육기관까지 무상교육의 영역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 초/중학교의 완전 무상교육화

- 학교운영지원금, 학교발전기금 폐지해야 -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처음 실시 된 것은 1950년 6월 1일부터입니다. 벌써 55년이나 흘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한다(제31조 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9년 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학전 만 5세아가 2008년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셈입니다.

1) 그 주요내용은 △진학률이 100%에 이르는 보통공민교육인 고등학교 무상화 추진 △안전하고 맛있는 초중고교 무상 급식 △초중고교 학용품비 지원 △장애인 학생 무상교육 △교육의 질을 현재보다 높이기 위해서 교사 약 2배 증원 등이다.

그러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만이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중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각종 수업자료비를 부담해 실제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임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무상교육은 실제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완전무상화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초/중학교의 완전무상화’는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현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을 없애고, 교통비, 급식비, 교재비, 재량수업활동비 등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무상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4년에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처럼 학교운영지원금을 별도로 징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금 징수는 위헌입니다. 지난 3년간 불법으로 징수한 학교운영지원금을 일체 반환해야 합니다.

<표 2> 중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금액

급별	년도	납부학생수	징수금액
중	2002	193만 여명	약 2,700억원
	2003	198만 여명	약 2,900억원
고	2002	193만 여명	약 3,400억원
	2003	191만 여명	약 3,500억원

* 자료출처: 2004. 최순영 의원 국정감사 자료(<http://www.soonyoung.net>)

2. 보육의 공공성, 무상화 실현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해서 보육업무의 사회화 필요 -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은 아이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최초의 평등입니다.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문제는 학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학력으로 나타나는, 교육의 불평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불평등은 영유아시절부터 나타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2004년 12월 현재 전체 보육시설은 26,903개소입니다.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은 5.0%(1,349개소), 민간시설은 54.7%(14,728개소)로 이중 민간개인시설은 45.4%(12,225개소)나 됩니다.

〈표 3〉 보육시설 및 아동 현황

(‘04.12 현재)

구분	계	국·공립	민간보육				직장보육	가정보육
			소계	법인	법인외	개인		
시설수	26,903개소	1,349	14,728	1,537	966	12,225	243	10,583
(%)	(100)	(5.0)	(54.7)	(5.7)	(3.6)	(45.4)	(0.9)	(39.4)
아동수	930천명	107	691	136	48	507	12	120
(%)	(100)	(11.5)	(74.3)	(14.6)	(5.2)	(54.5)	(1.3)	(12.9)

※ 자료출처: 여성부, 업무보고자료.(2005. 05)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8년까지 보육5개년 계획을 세우는 등 나름대로 보육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10% 국공립 시설을 포기하고 90% 민간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설지원을 포기하고 개별 아동지원방식으로 정부 지원방식을 변경한 것입니다. 정부 보육 정책대로 아동 개별 지원 방식으로 간다면 민간 시설은 더욱 늘어나고 국공립 시설은

1~2%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공립 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공공성 강화를 포기하게 되면 보육시설 민간화로 인한 보육료 인상은 명확합니다. 아동개별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비용이 계속 상승할 뿐 더러 민간에서 담합하여 인상을 요구할 경우 정부에서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질문 2> 국공립 시설 확대를 포기하고 아동의 양육을 민간시장에 그대로 내놓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공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보육료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공립 및 지원시설 10%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시설 아동의 30%입니다. 아동비율로 따지면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국공립 50% 이상 확충하여 시설 입소 아동의 70% 이상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민간과 경쟁의 우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육료 인상을 막을 수 있고 공공성 확대를 통해 민간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에게도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유아(유치원)교육의 무상화

-교육복지형 학교체제로 시장의 무정부성 극복 -

유아교육을 만 3~5세아의 '교육복지형 학교체제'로의 일원화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에 팽배해있는 '시장의 무정부성'을 극복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무상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08년까지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만 4세, 만 3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 무상교육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즉 취학 전 1년 5세아 무상교육과 함께 3~4세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현재 유아교육에도 부의부빈익빈의 불평등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상유아교육의 실시는 도시저소득, 농어촌 지역 유아가 우선 실시되어야 합니다. 상류층을 포함한 모든 만 5세아의 무상교육 실시보다, 우선 저소득층 아이들의 3~5세 무상교육이 실시되도록 정책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저소득층 유아교육은 최소기준이 아니라, 최적기준의 유아교육을 실시해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국공립 시설을 확충해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무상교육의 수준은 유아가 유치원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교육활동과 급식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 4> 만 5세아 무상교육에도 6000억원이 소요되는 등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저절로 유아교육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 예산을 비교해 보더라도,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유의미한 유아교육재정의 확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5> 본의원은 유아교육재정 확보방안으로 가장 현실적인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사용처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육/유아교육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예산을 매년 GDP 대비 0.1%씩 증액하여 향후 5년 이내에 OECD 수준인 GDP 대비 0.5%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체제 극복해야 -

현재 만 3세에서 만 5세에 해당하는 유아교육은 유치원과 사설학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여성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부처의 중복은 예산낭비와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체계적인 유아교육의 실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질문 6>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제·개정하여, 단일 법체계를 확립하고 만 0~3세는 보육, 만 4~5세는 유아학교 체제로 전환하고, 영·유아교육의 행정관리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4. 학교급식도 교육이다. 교육은 무상이어야 한다.

- 단계적 무상급식, 직영전환, 우리농산물 사용 -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학교급식에 대해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상급식 확대 실시와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이고 둘째는 친환경 우리농산물 의무사용 법 제화입니다. 또한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학교급식에 대해 마찬가지로 중요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 확대와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기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문 7> 정부가 제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노무현 정부가 학교급식과 관련 대통령선거 공약과 총선공약을 저버렸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있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하여 정부는 무상급식 확대와 우리농산물 사용 법제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급식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학교급식운동이 매우 확산되어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100개가 넘게 조례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발의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방해입니다. 지역조례의 우리농산물 사용 조항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것입니다. 현재 경남, 전북, 경기, 서울이 제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발의한 국민들과 시도의원, 자치단체장은 원망의 화살을 정부에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이유는 조례에 국내농산물 사용과 지원을 명문화하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대법원 제소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교적 무능을 드러내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첫째, WTO 협정위반인지는 WTO 분쟁조정기구에서만 판단 가능합니다. 조례를 정부가 자국대법원에 제소하여 WTO 위반이라고 판결해 달라고 하니 우리의 대법원도 갑갑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관계는 상호주의가 원칙인데 미국, 일본, 유럽등 우리가 협정을 맺고 있는 대부분 나라에서 자국 학교급식법에 자국농산물 사용을 지원하고 있어서 시빗거리가 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확실한 것은 WTO에서 우리나라도 학교급식지원을 예외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유리한 협상 조건 마련을 위해서라도 학교급식법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하겠다는데 정부가 WTO 눈치만 살피고 있다면 이는 독도문제나 일본교과서 문제만큼이나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당당한 외교태도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질문 8> 총리는 우리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리고 농업과 환경의 측면에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9> 만약에 우리농산물 사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우리의 조례와 법을 미국, 일본 등이 WTO에 제소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 대안이 있습니까?

학교급식은 700만명의 아이들이 12년 이상을 식사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아이들의 현재의 건강과 생명, 미래의 국민건강, 농업과 환경에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정부는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학부모가 급식비를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질문 11> 학교급식을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 국가의 재정을 지원하고 집행계획을 세울 의지가 있습니까?

물론 학교급식을 개선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정부가 급식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추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학교급식이 중요한 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은 당연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해서 학교급식에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가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질문 12> 당장이라도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고 관련 부처가 지혜를 모아 교육, 농업, 행정자치, 환경 등 다각적인 정책 계획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학교급식문제는 그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아이들과 농민과 국가의 미래건강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표 4> 단계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2조2천5백억원.

구 분	전 체 학생수 (천명)	급식학생수(추정)		무료급식 소 요 액 (억원)	산출기초 (교육부 제출자료 참고함)	
		현재(2004.7월)	무료급식시 급식학생 %			
초등 학교	4,176	3,857	92.3	4,000	95.8	15,120 -식품비 1,400원×4,000천명×180식 -인건/운영비등 700원×4,000천명×180일
중 학 교	1,859	1,720	92.7	1,780	95.6	7,369 -식품비 1,600원×1,780천명×180식 -인건/운영비등 700원×1,780천명×180일
특수 학교	24	22	94.0	23	95.8	95 -식품비 1,600원×23천명×180식 -인건/운영비등 700원×23천명×180일
계	6,059	5,599		5,803		22,584

<표 5> 우리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필요예산: 1천4백억원.

급식 학생수(2004.7월) (천명)	급식비 추가 소요액(원)	산출기초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참고함)
직영급식	위탁급식	계
5,409	1,626	7,035 1459억6218만

* 현재 급식비용은 연간 2조 8,531억원. 학부모가 2조3,533억 원(82.5%) 부담

5. 고등학교의 단계적 무상화

- 농산어촌, 실업계 고교부터 단계적 무상화 -

2004년 현재 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기준 분기별 납입금은 33만5700원입니다. 또 분기당 7만5천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감면이 2005년에 들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13>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여 고등학교 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우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우수기능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실업계 고교는 전면 무상화해야 합니다. 또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어촌교육을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화하여, 농어촌 학교 특성에 맞게 교원배치기준과 시설기준 강화하고, 학급편성기준 30명 이하로 해야 합니다.

<표 6> 실업계고교 전액 무상교육 시 소요예산 추정액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05년 (1학년 지원)		'06년 (1, 2학년 지원)		'07년 (전 학년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741교)	183,605	210,942	370,910	449,968	557,064	752,880
농산어촌(327교)	38,835	28,706	78,695	61,173	118,519	106,298
농산어촌제외(414교)	144,770	182,236	292,215	388,795	438,545	646,582

* 자료출처: 2004년 교육부 국감자료

* 통계 기준년도: 2002학년도, 물가상승률 기준: 연 7%

*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비용: 2조 2천억원.(현재 고등학교의 학비는 일년에 약 120만원임. 고등학생수는 1,911,173명)

6. 교육기회보장과 통합교육으로 장애아 무상교육 실현

현재 장애아 교육은 적절한 교육기관 및 교수학습체제가 미흡하여 혜택률이 대단히 저조하며, 통합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수 가운데 실제로 장애인교육을 받는 학생은 5만4천여명으로서 수혜율이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질문 14> 교육기회 보장 및 특수교육지원서비스 강화로 장애학생에 대한 100% 특수교육수혜율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참고 1> 장애아동양육수당 확대 예산추계

- 장애아동보호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의거 1~3급중증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지원하고 있음
- 등록장애 1백만명 중 상위 30%를 뺀 18세미만 장애아동 7만2천명을 부양하는 가구에게 교육비 및 간병비 평균액을 합산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6만2천원 지급.
- 이를 위해서는 400억 원이 소요됨.

7. 평생교육의 무상화

- 성인문해교육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해교육 우선 실시 -

성인 인구의 약 8.4%가 완전 비문해자 상태로 하위 24.7%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문해율은 여성, 노령, 저학력, 저소득층,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높습니다. 지역사회 무상 교육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충해,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이주노동자의 평생교육센터와 그들 자녀의 보육 및 교육기회를 무상교육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8. 대통령직속 '무상교육 추진위원회' 설치해야

무상교육이 국민들에게 큰 호감을 갖지 못하는 배경에는 공교육의 부실과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이 있습니다. 수험료 등 사부담공교육비가 GDP 2.7%나 되고, 과외 등 사교육비도 GDP 4~7%(24~42조)나 됩니다.

빈곤층과 상위층의 교육비 지출 격차는 2.65배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교육비 부담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위 20%계층, 2002년 8.9%, 평균 7.6%). 한국의 노동자 가구의 교육비 부담 비중은 일본에 비해 약 3배나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비 부담 때문에 10가구 중 8가구는 자녀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다시 교육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 임금이 올라봤자 사교육비로 다 나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15> 보육에서 고교까지 무상교육으로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OECD 수준의 교육수준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교사-학부모-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이루어진 범사회적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 속의 ‘무상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장기적으로 대학무상교육, 공교육 강화로 나아가야 -

오늘 질문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무상교육의 정책의 완성은 대학의 무상교육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사립대학이 아예 없거나, 공립대학에는 등록금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공립대학은 대부분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매우 적습니다. 영국의 경우 등록금은 있으나, 거의 모든 자국 학생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립대를 평준화하여 통합네트워크화하고, 사립대의 비율을 축소하여, 국공립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비정규법안! 구속노동자 사면이 필요하다!

1. 비정규직 법안 처리 계획

빈부격차 확대, 빈곤층 증가가 위험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하위 10%의 18배나 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득격차는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폭발적 증가로 이미 예견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800만이 넘도록 비정규직을 방치해왔으며, 이들에게 기본권을 제대로, 그리고 충분하게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갈수록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의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국민입니다. 국민중 800만이 불안정한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적 배려뿐만 아니라 하

루빨리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16>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총리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7> 현재 금번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한 당정협의가 있었다면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구속노동자 사면계획

저는 지난 5월 경제인 31명에 대한 석탄절 사면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이른 바 힘센 분들, 권력의 측근들을 봐주는 연례 행사가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더 큰 것은 돈과 권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서 노동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갈 수 밖에 없는 구속노동자들에 대한 사면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18> 현재 상당 수의 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과 노동쟁의 등으로 구속수감 중에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노동을 통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 법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에 많은 노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원들이 반대하는 교원 평가 교육부 정책먼저 평가해야

다음으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원정책은 교원의 동의와 참여가 가장 핵심입니다. 특히 교원 평가는 교원들이 이 정책이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 목표한 바를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교원평가 안에 대해서 초중등 교사 25만명이 반대서명을 하였습니다. 서명을 통하여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한 교사가 25만명이면 전체 교원들의 대다수가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19> 부총리는 교원 평가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반대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사들은 어떤 평가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 또한 평가의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육부 안 대로라면 절대 우리 교육이 발전할 수도 없으며, 평가조차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가 교사평가를 통해서 해결됩니까? 전체적인 교육현실, 학교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교사 개개인을 평가한다고 해서 교육현실, 학교 현실이 개선됩니까?

질문 20> 정부의 교육정책, 교육과 관련한 사회적 구조, 학교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교원에 대한 평가가 병행된

종합적인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는 이러한 종합 평가 제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1966년 10월 파리에서 정부간 특별회의로 채택된 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보면, “교원단체를 명확한 교육정책 결정의 주파트너로 인정하고, 특히 교원의 근무를 평가하거나 교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기준은 교원단체의 참여하에 규정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 학교 지원을 받아서 9월부터 시행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 주체들은 “교육부가 교육주체들은 들러리를 세우고 교육부가 자기 안대로 진행하겠구나”라는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교육부의 정책추진 방식을 수십 년간 경험하면서 얻은 기본적인 불신입니다.

질문 21> 교원들의 신뢰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원평가 정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일단 폐기하고, 전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교육부 정책입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문제, 08 대입제도 개선안 등, 수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정책이 있습니다.

질문 22> 교육부가 진정 교원 평가를 해야 하겠다면 그 이전에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정책 평가제”를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교육부의 정책을 평가한다면 교원 평가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책, 08 대입제도 개선안 등과 함께 최하의 점수를 받을 것입

니다. 평가는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만일 교육부에 예산도 제대로 책정해 주지 않고 무조건 교육부만 탓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지원, 고려와 함께 이뤄지는 평가가 온전한 평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원 평가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지난 5월 3일 무산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교육부 관계자가 제시한 사례가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지난 2월에도 교육부 홍보 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교원평가 사례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청회 이전에 시범학교 운영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무가내, 거짓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교사 8명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질문 23> 그렇다면 허위 사례를 발표한 담당자에게는 책임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공청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교사를 고발하는 자세로 교원 평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해당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원 평가와 관련해서는 교사, 학부모들과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부가 먼저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원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시범학교 운영계획을 일단 폐기하며, 교원, 학부모들과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입시문제, 공교육강화 원칙으로 풀어야. 3불 법제화하고 대학서열체제 해소 근본 대책 제시해야

대학입시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08 입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내신의 반영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능을 등급화하였기 때문에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있습니다. 만일 대학들이 내신의 실질 반영률을 높이지 않는다면 내신 중심의 선발이라는 정책의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질문 24> 교육부가 진정 내신중심의 선발 정책으로 가고자 한다면 내신 실질 반영률의 최소비율을 정해서 대학들이 그 비율 이상 내신을 실질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대학별 본고사를 불허한다는 교육부 입장을 3불(不)이라고 합니다. 2004년에는 세간에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고교등급제 실시가 사실로 드러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논술시험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사실상 논술을 빙자한 본고사였다는 것 또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가 3불 입장을 말하지만 이에 대한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대가 논술형 본고사를 보겠다고 하니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 타협하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교육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가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질문 25> 지금 국회에는 3불을 법제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3불 법제화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3불이 법제화되어서 우려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논술은 자신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학들은 “본고사형 논술”이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질문 26> 논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본고사형 논술은 진정한 의미의 논술입니까? 아니면 논술을 빙자한 본고사입니까?

현재의 입시문제는 결국 서열화된 대학체제 때문에 생기는 학벌주의에서 그 근원적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학점교류, 학생 교류의 폭을 넓혀서 대학들 간의 통합전형을 실시하여 대학 서열체제를 해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 27> 먼저 교육부는 08년부터 현재의 각 지역 4년제 국립대학 간의 통합전형, 각 교육대학 간의 통합전형을 실시하여 대학입시과열과 서열체제를 해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4년제 국립대학들 간의 교육환경이 균일하고, 교육대학간의 교육환경도 균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면 08년 입시에서 통합 전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통합전형실시의 경험을 통해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 28> 작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교육발전 협의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교육현안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의는 한번 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미 제출되었어야 할 대

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발전 협의회를 보다 강화하고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 5월 7일 학생들이 “경쟁적 입시교육 반대”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 교육 정책의 대상으로만 치부되었던 학생들이 교육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외침은 소박하면서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외침에 대해서 겸허하게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사령부인가?

1.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몰 준비를 해온 교육부

지난 5월 23일 언론보도로 알려진 정부의 전시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은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언론보도의 주요내용은 “지난 3월 교육부가 일선고등학교에 내려 보낸 전시학도호국단운영 계획의 문건에 각 고등학교를 전시 학생동원조직인 학도호국단으로 편성하고 이를 점검한다고 돼 있으며,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결원이 생기면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동원하도록 되어 있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전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UN협약과도 전면 배치되며, 전시 좌경학생 지도라는 명목으로 좌경학생과 교사를 파악해 특별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자 5월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일부언론에서 보도된 전시학도호국단 문서 편성과 관련하여, 교육인적 자원부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개선·보완토록 하겠다며 이번 논란은 과거 긴장고조의 냉전시대에 수립된 계획 내용을 시대 상황변화에 맞게 개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이 되었던 것과 학생들의 단번 부여, 좌경학생 및 교직단체에 대한 관리부분 등 사회적 물의를 빚게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변화된 안보 환경을 고려하고 학생의 인권보호 등 비교유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고 이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질문 29>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무책임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가 많은 계획을 유지해온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2. 정부의 정책기조 따로 비상계획 따로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서는 대외비 문서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매년 똑같은 내용을 학교에 하달하였을 것입니다. 정부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가장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할 우리 학생들을 전시에 동원하려고 했다는 점. 둘째, 시대에 걸 맞지 않게 학생, 교사를 이념적으로 분류해 관리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알려진 바대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유엔이 채택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의정서의 핵심내용은 "무력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유해하고 광범한 영향과 이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 안전 및 발전에 대하여 갖는 장기적인 결과를 우려하여 아동은 무력분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2000년 유엔 사무총장이 이 의정서와 관련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은 국제적, 국내적 무력분쟁의 주요 피해자이다. 2천1백만 명의 국제 난민 중 절반이 아동이며, 국내유민 중 아동수도 1천3백만 명에 이른다. 현재 약 30만의 18세 이하 소년병이 존재하며, 해마다 약 1만여 명의 아동이 지뢰의 피해를 입고 있다.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에서 1996년 사이에 2백만 명의 아동이 전쟁으로 사망했다. 또한 많은 청소년이 새로운 전쟁 수단이 되어버린 강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에이즈 등의 질병이 만연하고 있다. 가치관과 법적, 사회적 구조의 붕괴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한다. 결국 아동은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성인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이다"라고 전쟁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엔이 의정서를 채택한 그 해에 서명을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질문 30> 현 정부의 국가정책기조에도 어긋나며 우리가 가입한 유엔의정서에도 배치되는 현 전시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수립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현재의 계획은 당장 폐기하여야 하며 새로운 내용의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OECD, 2003. Education at a Glance.

대학무상교육: 학생, 학부모의 참여권리 보장부터 시작해야

1. 고등교육 재정확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은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은 매년마다 엄청나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방기에서 비롯합니다. 우리정부 고등교육 재정은 2004년 기준으로 GDP의 0.4%으로 OECD 국가 평균인 GDP의 1.0%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부담 비중은 낮고 민간재원 비중이 과도합니다. 고등교육 재원의 공공재원대 민간재원 비율을 보면 OECD 회원국가 평균이 78.2% 21.8%입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공재원대 민간재원의 비율이 15.9% 84.1%로 대부분 민간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학생등록금 수입의 존율이 OECD 평균은 21.4%에 지나지 않은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대학은 재원의 76.7%를 학생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등교육기관 재정 대부분이 학생등록금으로 이루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표7〉 OECD 고등교육 재정 국가간 비교

구 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1.4	2.7	2.7	1.1	1.1	2.5	1.0	1.1
공공재원	1.0	0.4	0.9	0.8	0.5	1.5	1.0	1.0
민간재원	0.3	2.3	1.8	0.3	0.6	1.0	0.1	0.1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의 상대적 비중(%)	78.2	15.9	34.0	71.0	43.1	58.6	91.3	85.6
민간재원	21.8	84.1	66.0	29.0	56.9	41.4	8.7	14.4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관련 정책도 현재의 심각한 등록금 인상의 원인입니다. 즉 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로 대학 등록금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교육부는 국립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심의위원회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후 국립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불균등 인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물가인상에 의해서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제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8%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7%이상으로 두 배 가까운 인상을 해왔습니다. 이는 결국 물가 상승을 등록금 인상이 부추겨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부실한 고등교육 재정과 정부의 등록금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질문 31>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님은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립대학 등록금이 1년에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대학등록금이 부담스러워 휴학하거나 군대에 가는 식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러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뒷짐만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교육재원은 GDP 대비 약 0.4%입니다. 이는 OECD 평균 1.0%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고등교육재원을 최소한 GDP 대비 1%까지만이라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32>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고등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총리직을 걸고서라도 교육재정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실 때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따라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학등록금이 엄청나게 인상되어 이제 ‘대학은 우골탑(牛骨塔)이 아니라 인골탑(人骨塔)”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 국공립대 등록금 정책에 대하여

질문 33>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수준의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가 한일이 무엇입니까?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합니다. 학자금융자제도 개선도 좋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돈 없어서 대학 못들어가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유럽과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수준이 되기 전에 이미 대학교육을 거의 무상으로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에는 “국공립대운영에관한특별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공립대 입장에서는 독립채산제가 되면 학생 등록금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유혹이 매우 강하게 됩니다.

질문 34>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2003년의 국립대학수업료및입학금심의위원회 규정 폐지가

현대의 등록금 인상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 대표들이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들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보다 내실화된 국립대학수업료및입학금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35>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국립대학수업료및입학금심의위원회규정(안) 예시

제 1조(목적)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의규정에따라 국립의 대학교육 대학산업대학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수업료및입학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 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립의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책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국립의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요인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에 관한 심의 후 심의 내용의 반영여부 등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민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 학생대표, 학무모대표, 회계관계 전문가 및 고등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다만, 학생대표와 학무모대표 총수는 전체위원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호선한다.

제 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회의)①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에 대한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위원회 개최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안건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가능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7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고등교육정책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 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재 국립대의 경우 기성회비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4년 국립대 등록금대비 기성회비 비율 평균이 73.4%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기성회비 인상을 8.9%, 평균 수업료 인상을 4.9%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래 기성회계는 국가가 부담하지 못하는 고등교육재정을 임시방편으로 학부모에게 부담하는 것이었으나 고착화되어 있으며 기성회비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가 대학 자율을 말하지만, 이는 결국 대학 운영권자의 권한 강화만을 말할 뿐이지, 실제 대학의 구성원 즉 학생, 교수, 교직원의 권한강화는 아닙니다. 특히 기성회의 경우 실질적으로 기성회 회원인 일반 학부

모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은 기성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기성회의 이사가 기성회계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회 이사는 대부분 단과대학 학장들이 학부모 중 유력인사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진들이 재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부분 기성회비 인상에 대해서 무감각하며, 관련 문제제기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대 국정감사를 하면서 기성회 이사회 구성과정, 구성 현황,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기성회 임명직 이사의 선임을 각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있으며, 임원진(회장, 부회장, 감사)도 기성회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선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기성회 이사 현황을 보니 이른바 회사 임원 이상 사장님들이 반 이상이었고, 나머지도 대부분 의사, 변호사, 검사였습니다. 결국 기성회 이사회는 대부분 총학장의 위촉으로 이뤄지며, 학생의 이사 추천권, 이사회 참관권, 기성회 운영 및 예·결산 관련 정보접근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질문 36> 부총리는 대학생 학부모들이 회사 사장, 변호사, 의사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분들이 기성회 회원들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회 이사회의 제대로 된 구성을 위해서는 기성회 이사가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위촉이 아니라, 학생들의 대표체인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에게 학부

형 중 기성회 이사를 추천하여 선임하는 방식으로 선임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기성회 이사회 운영은 매우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회비를 내는 기성회원들이 학부모들이며 그들의 자녀들인 학생들의 대표조직이 기성회 회의에 대한 참관조차도 못한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립학교도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정부여당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립대학에서, 학부모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기성회 회의록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결산에 대한 상세 내역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 기성회예결산 상세내역 공개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꾸는 것은 정부에서 계속 말하는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현재 기성회계는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련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이 규정을 바꾸어서 기성회 이사 학생대표 추천권보장, 참관권 보장, 기성회 회의록 및 예결산 상세내역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질문 37> 정부는 제가 제안한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 규정을 개정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참고 >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개정(안) 예시	
현행	개정안
< 신설 >	제 5조(임원 및 그 직무) ①기성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 1. 회장 1명

< 신설 >	2. 부회장 2명 3. 이사 20명이상 30명 이하 4. 감사 2명 ②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감사는 이 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6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이 회의 임원중 이사는 당해학교 총학생회장과 단과대학 학생회장, 대학원 학생 대표의 추천으로 총장 및 학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연도 개시일 60일 이내에 이사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장의 위촉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 임원이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총장, 부총장으로 한다. ④ 감사중 1인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12조(기성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이 사회가 그 권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 서명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주된 사무실에 비치열람하도록
--------	--

하며, 3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예산결산보고서의제출및공개)③ 1항
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주된 사무실 홈페이지에 비치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3. 사립대학 재산관련 규정 강화에 대하여

과도한 사립대 등록금 현실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는 사립대 재정구조의 열악함으로부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구조가 얼마나 열악한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재단 전입금 규모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없는 대학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립대 재정운영은 대부분 등록금수입, 기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등록금 수입이 전체 운영수익에서 180개교중 80%이상인 학교가 60개(33.33%)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조차도 준수하지 못하여 대학운영의 법인기여도 매우 낮습니다. 법인은 대학의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1항), 전체 사립대의 80.0%가 이를 준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2항), 전체 사립대의 51.11%가 이를 준수하고 있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 사립대학이 적절한 적립계획없이 과도한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 국내 사립대학의 적립금 총액이 4조 111억원입니다. 규정상 이 적립금들은 적절한 적립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적절한 적립사유 제출 없이 그저 대학에 돈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질문 38>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무계획적이고 과도한 적립금에 대한 적정 규모의 법제화와 적립계획 사유의 적정화를 통해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방안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무대책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 드린 것은 특별히 국가 재정이 필요한 정책이 아닙니다. 다만 교육부가 어떤 의지와 인식을 가지고 대학 등록금 문제에 접근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매매 단속 강화해야 관계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필요

다음으로 성매매 단속과 관련하여 여성부 장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1. 완월동 문화축제 무산과 성매매방지법 대책

지난 5월 29일 성매매여성 집장촌 시범지역인 부산 완월동에서 문화축제인 “언니야 놀자”가 업주와 지역상인들의 방해와 상담원들에 폭언, 폭행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언니야 놀자”는 지난 3월 여성부 공동협력 사업으로 선정된 완월동 내에서 여는 문화축제로, 여성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형성된 상담소와 여성들 간에 신뢰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 29일 문화제 행사 준비과정에서 해어화 회장은 전치 3주, 살림 상담소 상담원 6명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할 부산서부경찰서는 이런 폭력사태에 대해서 수수방관했습니다. 5월 29일 문화제 행사 무산 이후 지금 완월동은 정부정책에 호의적이지 않은 업주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정책의 위기뿐만 아니라 성매매방지법 자체의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이 철저하게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지금 완월동은 불법집단이 판을 치고 있으며,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나가 있던 여성들이 영업이 잘된다라는 소문을 듣고 들어오고 있으며, 한달에 20만원이던 청소비를 7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

황에서 과연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완월동 상담소에서는 생명의 위험과 시범사업의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전국 38개 집결지 중 여성부의 정책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완월동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왜 성매매에 관한 모든 일들을 여성부와 여성단체만 해야 합니까? 분명 국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정해졌으며, 주무부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와 경찰청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여성부와 여성단체 너희들 잘해보라는 듯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협력해도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힘없는 여성부 혼자만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질문 39> 장관은 다른 부서와 어떻게 협력 체제를 이뤄 성매매를 근절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0> 5월 29일 불법집회를 방치하고 상담원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경찰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하며 관할경찰서에 단속 권한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결지 단속권한을 해당 집결지 경찰이 아닌 지방청차원에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리법인 병원 허용’ 사회의 양극화 심화 불 보듯

- 주식회사 병원을 허용할 것인가? 행복한 기업, 불행한 국민 -

영리법인 허용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서비스는 ‘산업’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우리의 의료현실에서 아직도 국민 대다수는 병이 걸리면 고액의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중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는 ‘환자의 건강권리’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로 “의료기관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의료 시스템의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험을 볼 때 지방공사의료원을 민간위탁한 이후 진료비가 적계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급등했고,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이 동일 서비스의 가격이 적계는 3%에서 많게는 11%까지 더 비싸며, 영리병원의 환자 사망률이 더 높고,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8〉 한국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건강보험부담분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영역
		*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영역	
각 영역별 의료비 비율(100%)	56%	23%	21%

※ 자료출처: 2005. 건강보험연구센터 발표

〈표 16〉 민간위탁 이후의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 변화

(단위 : 원, 음영은 민간위탁 기간)

의료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민간위탁 의료원	53,882 (100)	57,261 (106)	67,708 (126)	68,852 (128)	74,758 (139)	83,730 (155)	80,839 (150)	81,634 (152)
군산의료원	49,194 (100)	52,882 (107)	57,386 (117)	62,225 (126)	58,663 (119)	62,578 (127)	91,298 (186)	91,499 (186)
마산의료원	27,095 (100)	28,357 (105)	42,042 (155)	40,950 (151)	116,123 (429)	117,703 (434)	107,825 (398)	102,739 (379)
이천의료원	37,119 (100)	36,893 (99)	45,993 (124)	46,335 (125)	52,367 (141)	107,276 (289)	109,328 (295)	103,869 (280)

이미 대다수의 병원들이 영리법인처럼 운영됨으로 인해 ‘공공재’로서의 ‘의료’가 상업화로 가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규제를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법까지 풀어주는 것은 공식적인 의료장사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41> 이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규제과잉이 문제라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과잉’이 아니고, ‘규제부재와 시장방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의료보험제도 시행 당시, 20%에 달하던 공공 의료기관의 비중이 현재는 10%대로 줄어든 실정이고, 그간 정부의 예산투자와 정책부재 속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긴 결과입니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식회사 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한국의료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이끄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확충을 추진하더라도, 영리법인 병원 허용방침과 함께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중시키고, 의료서비스 전반의 가격인상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건강보험 같은 공적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질문 42>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인 경실련, 참여연대, 의료연대회의, 장애인 단체, 여성단체 등 51개 단체와 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까지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렇게 많은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데 정부는 계속 강행하시겠습니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전농 등 시민사회단체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운동본부’를 결성해, 범국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2004년 5월 1일 노동자대회에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을 중심으로 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선언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내년 노동절 총파업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무상교육은 사교육 병폐 해소와 공교육내실화를 이를 가장 유력한 방안입니다. 아무리 임금이 높아져봐야 사교육비로 다 나갑니다. 자본가 자식 자본가 되고, 노동자 자식 노동자 되는 자본주의 모순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무상교육은 ‘경쟁교육’을 넘어 노동자, 서민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는 빈부 격차와 그로 인한 교육격차를 줄이고, 민중의 교육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확대=무상교육 실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